

# 201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(1유형) 신청(2차) 안내

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(1유형) 2차 신청일정을 안내드립니다.

1. 신청기간 : 2014.8.26(화) 09시 ~ 2014.9.4.(목) 18시

2. 서류제출 : ~ 2014.9.12(금) 18시 (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)

※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 (8.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참고)

3. 신청 시 유의사항

가.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: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
- 부전공,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
· 신입생의 정규학기 : 8학기 (이수학기 기준)

· 편입생의 정규학기 : 2학년 편입생은 6학기,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(이수학기 기준)

나. 학적구분 표시방법

: 2014학년도 1학기(이전학기 포함)에 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 한 학생은 “재학생” 으로 지원

※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예정학생의 경우

학적구분
·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(1학년) : 신입생
· 2014학년도 2학기 편입생(2, 3학년) : 편입생
·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: 재입학생

※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. 지원대상

: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함

※ 참고 : 2014학년도 2학기 기준 환산소득표

소득분위	환산소득
기초생활수급자	-
1분위(차상위계층자)	~ 1,676만원(이하)
2분위	~ 2,604만원(이하)
3분위	~ 3,351만원(이하)
4분위	~ 3,972만원(이하)
5분위	~ 4,565만원(이하)
6분위	~ 5,219만원(이하)
7분위	~ 5,979만원(이하)
8분위	~ 7,071만원(이하)

5. 성적기준

대상	학점 및 성적기준	비고
신입생	·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	-
편입생		
재학생	·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·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80점 이상	· 장애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·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
	<b>2학기 신규적용 사항</b>	
	<b>※ 성적 경고제 도입</b> · 대상 : 소득 1분위 이하 학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자 포함) · 적용사항 -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<b>2014-2학기부터 70점 이상 ~ 80점 미만(백분율 성적)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함</b>	

## 6. 2014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

소득분위	최대지원 장학금		
	1학기	2학기	연간
기초생활수급자	225만원	<b>225만원</b>	450만원
차상위계층자	225만원	<b>225만원</b>	450만원
2분위	225만원	<b>225만원</b>	450만원
3분위	168.75만원	<b>168.75만원</b>	337.5만원
4분위	123.75만원	<b>123.75만원</b>	247.5만원
5분위	78.75만원	<b>78.75만원</b>	157.5만원
6분위	56.25만원	<b>56.25만원</b>	112.5만원
7분위	33.75만원	<b>33.75만원</b>	67.5만원
8분위	33.75만원	<b>33.75만원</b>	67.5만원

\*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, 수업료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 소멸됩니다.

7. 지원학기 :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,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(2번, 가항목 참조)

## 8.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)

① 공인인증서 발급(거래은행에서 발급)

② 홈페이지 회원가입
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(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)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
③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(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)

④ 국가장학금 신청(1유형) : 2014.6.10(화) 09시 ~ 2014.6.30(목) 18시

-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
-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
- 신청정보 입력 : 개인 인정사항, 가족정보, 학교정보, 개인계좌 입력

⑤ 서류접수(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) : ~ 2014.7.3(목) 18시

-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.
- 필수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
- 선택서류 : 장애인증명서,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**<서류 제출방법>**

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-> 사이버창구 -> 장학/대출신청 -> 장학/대출 신청현황 -> 서류제출 버튼 클릭 ->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

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: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 (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)

※ 참고 :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증명서	명의	발급기관	비고
한부모가족 증명서	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·자매 (배우자, 자녀)	주민자치센터	만18세 미만 발급 (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)
·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·장애인연금, (경증)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		주민자치센터	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	국민건강보험공단	만성(정신)질환자,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
자활근로자 확인서		주민자치센터	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
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결과통보서		주민자치센터	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“보장적합”인 경우만 인정함(기초수급자제외, 보장내역에 바우처제외)
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		주민자치센터	
<p>※ 증빙서류 관련 설명</p> <p>① (학생)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만 제출</p> <p>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와 (학생)본인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</p> <p>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</p> <p>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: (학생)본인 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</p>			

**8. 장학금 반환**

- 1)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
  - 2)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 - 3) 이종수혜가 드러날 경우
  - 4)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
  - 5) 정신적·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☞ 1)~3) 경우 장학금 자격 박탈, 4)~5)장학생 지원 중단

※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문 [다운받기], 국가장학금 신청메뉴얼 [다운받기]

**9. 문의**

☎ 1599-2000 (학자금 콜센터)

☎ (051)320-2754 (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)